

SMCS 31 45 30 10 : 2018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2018년 05월 03일 개정

<http://www.kcsc.re.kr>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시방서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와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중심으로 KCS 31 45 30 10 등의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개정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전문시방서 (분야 및 코드)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설비분야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정보통신설비)	• 건축물 부대설비 관련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04)
설비분야 (산업설비)	• 산업설비공사 관련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1.03)
설비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02.06)
설비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03.03)
설비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04.11)
설비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06.09)
설비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10.10)
SMCS 31 45 30 10 : 2018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개정 (2018.05)

제 정 : 2000 년 04 월 26 일

개 정 : 2018 년 05 월 03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관련단체 (작성기관) : 서울특별시 (주) 유신, (주) 조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2. 자재	1
3. 시공	1
3.1 설치	1
3.2 시험 및 검사	2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1 45 30 10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자재는 KCS 31 45 3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설치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설치는 KCS 31 45 30 10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KCS 31 45 30 10 (3.1) 의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② KCS 31 45 30 10 (3.1) 의 (3)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③ KCS 31 45 30 10 (3.1) 의 (4)항은 다음 (4)항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 ④ KCS 31 45 30 10 (3.1)에 명기된 항목 외에 다음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아래 표 3.1-1에 따라 설치한다.

표 3.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 인명구조기구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열복 또는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호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호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촉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촉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촉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5)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 (1)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30 10 (3.2)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총괄	장영일	(주)유신
	건축기계설비	나관운	(주)유신
	건축기계설비	김청환	(주)유신
	산업·환경	여두현	(주)유신
	산업·환경	송병재	(주)유신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건축기계설비	김경희	(주)신양테크
	플랜트설비	황인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기계·플랜트	손영기	한국공항공사
	기계·플랜트	강경원	한국소방기술사회
	기계·플랜트	김선태	(주)정보엔지니어링
	기계·플랜트	김용성	두산건설(주)
	기계·플랜트	김천용	한미설비(주)
	기계·플랜트	서병택	용인송담대학교
	기계·플랜트	심기석	세일이엔에스(주)
	기계·플랜트	이문봉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계·플랜트	정재동	세종대학교
	기계·플랜트	최종언	삼성물산(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 영 근	(주) 건 화
	김 영 환	한국시설안전공단
	서 경 숙	(주) 청우이엔지
	성 배 경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이 태 옥	(주) 평화엔지니어링
	조 의 섭	동부엔지니어링 (주)
	최 창 식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명	소속	직책
	김 홍 길	기술심사담당관	과 장
	국 중 연	기술심사담당관	설비심사팀장
	송 장 현	기술심사담당관	사무관
	정 경 수	기술심사담당관	사무관
	전 계 목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조 기 성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45 30 10 : 2018

인명구조기구 설치공사

2018년 05월 03일 발행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관련단체 서울특별시

(작성기관) (주)유 신
062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 (역삼동)
☎ 02-6202-0114 E-mail : webmaster@yooshin.com
<http://www.yooshin.com>

(주) 조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057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19 (가락동)
☎ 02-406-0332 E-mail : jowooeng@daum.net

서울특별시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120
<http://www.seoul.go.kr>